

# <2024년 경기 지역문화 지원 통합공모> 자주하는 질문

---

1	공모사업 안내	-----	1쪽
2	지원신청 유의사항	-----	2쪽
3	예산편성 기준 및 집행·정산 지침	-----	7쪽
4	자주하는 질문	-----	10쪽

---

# 2024년 경기 지역문화 지원 통합공모

## 1 공모사업 안내

### I 공모개요

구분	공모사업명	지원대상	지원규모
1	경기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: 리서치형	경기도 거주(소재) 지역활동가, 기획자(단체), 예술인, 문화예술단체, 프로젝트그룹 등	정액 300만원 (11건 내외)
2	경기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: 프로젝트형		최대 2,000만원 (8건 내외)
3	경기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: 공간조성형		최대 5,000만원 (1건)
4	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지원	문화원, 문화의집, 생활문화센터, 평생 학습원, 민간 문화공간, 경기도 거주 문화예술단체,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등	최대 1,500만원 (10건 내외)
5	경기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	① 경기도 소재 생활문화 동호회 ② 경기도 거주(소재) 예술인 커뮤니티	최대 300만원 (대상별 14건 내외)

- ※ 지역문화 지원사업(①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젝트: 리서치형, ②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젝트: 프로젝트형, ③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젝트: 공간조성형) 내 복수 신청 불가, 생활문화 지원사업(④생활문화 플랫폼 지원, ⑤예술동호회 활동 지원) 내 복수 신청도 불가. 단, 지역문화 지원사업과 생활문화 지원사업 간 교차 신청 가능
- ※ "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젝트" 신청 시 "2024년 지붕없는 박물관(경기 에코뮤지엄) 공모 지원사업"은 복수신청 불가

⇒ 지원사업별 세부 내용은 [공고문] 2024년 경기 지역문화 지원 통합공모'를 참고해주세요.

## 2

# 지원신청 유의사항

## I

### 지원 신청 제외 사항

#### 1.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
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
- 국립·공립(도·시·구·군립) 문화예술 기관·단체와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
-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
- 학교, 종교기관, 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
-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, 단체(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 기준을 따름)
-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거나 관련 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
-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, 단체
- 접수 마감일까지 2023년 경기문화재단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개인 및 단체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-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,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개인, 단체

#### 2.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 
(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지역문화진흥원, 영화진흥위원회, 한국콘텐츠진흥원, 지역문화재단 등)
- 정치적, 종교적 목적의 사업
-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
- 시설의 건립과 매입, 재건축 사업
- 기금 적립과 용자 지원사업
-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

## II

### 유의사항

- 지역문화 지원사업(①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젝트: 리서치형, ②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젝트: 프로젝트형, ③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젝트: 공간조성형) 내 복수 신청은 불가하며, 또한 생활문화 지원사업(④생활문화 플랫폼 지원, ⑤예술동호회 활동 지원) 내 복수 신청도 불가합니다. 단, 지역문화 지원사업과 생활문화 지원사업 간 교차 신청은 가능합니다.
- “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젝트”와 “2024년 지붕없는 박물관(경기 에코뮤지엄) 공모 지원사업”과 중복신청 불가합니다.
- 타 기관 및 재단에서 본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, 선정 과정 및 이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(환수)될 수 있습니다.

- 지원신청서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[www.ncas.or.kr](http://www.ncas.or.kr))을 통해 접수하며 우편 및 방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.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첨부파일 용량이 100MB 초과할 시 파일이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(100MB이하) 1건의 PDF파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- 접수 마감 당일은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제출 바랍니다. 접수 기간 내에 지원신청이 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최종 선정 결과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심의에서 탈락한 신청단체(개인)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.
-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시 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.
- 지정서식 외 다른 서식의 파일로 제출할 경우 결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및 동의서 작성 시 (인/서명)란 서명하여야합니다.  
(도장 및 서명 스캔한 서명, 마우스로 작성한 서명, 정확한 서명만 가능)
- 예산편성, 집행 및 정산은 각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야합니다.
- 지원금 300만원 이하의 경우 정산 간소화로 지원금에 대해 반드시 세금 신고를 완료하여야합니다.  
(2024.11.30.까지)
-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, 부적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사업취소, 지원금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당초 계획과 달리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.
- 사업 결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지원사업 결과물은 온라인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### Ⅲ | 예술 활동 증명

#### ※ <예술동호회 활동 지원> ② 예술인커뮤니티 신청 시 해당

- 예술인활동증명(예술인패스)을 제출하거나 구성원 별 각자의 예술활동 도록, 리플렛, 공연프로그램북, 연구실적 등을 증빙해드립니다. 단, 구성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합니다.

[참고] 「예술인복지법」 시행규칙 제2조 (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)

\* 출처: (한국예술인복지재단) 예술 활동 증명 기준 (공개 발표된 예술활동)

문화예술 분야	세부 기준
문학	※최근 5년 동안의 활동 기준임 ▶직업별기준 <b>시인.수필가</b> : 5편 이상의 시(시조, 동시 포함),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<b>소설가</b> : 1편(단편의 경우 3편) 이상의 소설(동화 포함),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<b>희곡작가</b> : 1편 이상의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( * 희곡작가는 3년 동안의 활동) <b>비평가</b> :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<b>공통</b> :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 출간 ▶세부기준 <b>1권</b> : 국제표준도서번호(ISBN)를 부여받은 서적 <b>문예지</b> : 국제표준도서번호(ISBN) 부여, 결호 없이 3년 이상 발간된 (문학)월간지, 또는 5년

문화예술 분야	세부 기준
	<p>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·계간·반년간 종합 문예지/잡지, 장르별 문예지, 혹은 3년 이상 된 일간지 및 30년 이상된 문학전문 주간지</p> <p><b>아동문학, 청소년문학 분야 신청 경우</b> : 순수 창작 저술 활동(위인전, 명작 재구성, 학습도서 미포함)이 주가 되고 교육·교양도서의 저술 활동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, 등단 여부, 교양·교육도서 기획출판 중에도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된 도서의 저술 활동 등 작가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확인</p> <p>▶자료 <b>표지/발행정보면/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첨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작품 발표일, 작품명 및 발표 매체,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</li> <li>- 예명 활동의 경우,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</li> </ul>
미술, 사진, 건축	<p>※최근 5년 동안의 활동 기준임</p> <p>▶직업별기준 <b>작가</b> : 5회 이상 미술·사진·건축 전시회에 참여하였거나 1회 이상 개인전 개최, 또는 5회 이상 관련 매체 등에 작품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발표 <b>비평가</b> : 5회 이상 미술·사진·건축 비평을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 비평집을 출간 <b>기획, 기술지원 스태프</b> : 3회 (예술감독의 경우 1회) 이상의 미술·사진·건축 전시에 참여 (* 전시기획자는 3년 동안의 활동)</p> <p>▶세부기준 건축분야 '시공'은 예술활동 미포함되며 전통 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 하지 않고 인정</p> <p>▶자료 <b>전시</b> : 도록, 리플릿 표지/내지 사진 촬영, 스캔 파일 첨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인전은 대관계약서 혹은 대관료 지급 내역 등 추가 첨부</li> <li>- 웹이미지 첨부시 자료 보완 요청될 수 있음</li> <li>- 전시기간, 전시명 및 주최 기관,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</li> </ul> <p><b>작품(비평)집</b> : 표지/발행정보면/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첨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작품 발표일, 작품명 및 발표 매체,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</li> <li>- 예명 활동의 경우,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</li> </ul>
음악, 국악	<p>※최근 3년 동안의 활동 기준임</p> <p>▶직업별기준 <b>가창자, 연주자</b> 아래 중 택 1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편 이상의 음악·국악 공연 혹은 텔레비전·라디오 프로그램 출연</li> <li>- 1장 이상의 음반 출반</li> </ul> <p><b>작사(곡), 편곡가</b> :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(곡) 또는 편곡하여 음반이나 음악·국악 공연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출간 <b>비평가</b> : 3편 이상의 음악·국악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음악·국악 비평집 출간 <b>지휘자</b> : 음악·국악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 <b>기획, 기술지원 스태프</b> : 3편 이상 음악·국악 공연 참여하였거나 3장 이상의 음반에 참여</p> <p>▶세부기준 <b>1편</b> : 개별 독립된 공연을 지칭하며, 동일 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함 <b>1장</b> : 최소 3곡 이상의 악곡이 포함된 음반 (디지털 음반 포함, 반주 음악은 1곡으로 미인정) * 유흥업소 공연은 음악 공연으로 미인정</p> <p>▶자료 <b>공연</b> : 포스터, 리플릿 표지/내지, 언론매체 기사, 출연계약서 중 택1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연일, 공연명, 참여자명 확인되는 자료</li> </ul>

문화예술 분야	세부 기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예명 활동의 경우,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저작권협회 재적증명서 등 첨부</li> <li>- 언론매체 기사의 경우 URL주소 포함</li> </ul> <p><b>음반</b> : 앨범 커버/발매정보면/크레딧 및 저작권 등록 자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음반명, 발매일, 참여자명 확인되는 자료</li> <li>- 예명 활동의 경우,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저작권협회 재적증명서 등 첨부</li> </ul> <p><b>악곡(음원)</b> : 스트리밍서비스 URL 및 저작권 등록 자료</p>
무용	<p>※최근 3년 동안의 활동 기준임</p> <p>▶직업별기준  <b>무용수</b> : 3편 이상의 무용 공연 출연  <b>안무가</b> : 1회 이상 무용 공연 안무 담당  <b>비평가</b> : 3편 이상의 무용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 출간  <b>기획, 기술지원</b> : 스태프 3편 이상 무용 공연 참여</p> <p>▶세부기준  <b>1권</b> : 개별 독립된 공연을 지칭하며, 동일 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함</p> <p>▶자료  <b>포스터, 리플릿 표지/내지, 언론매체 기사, 출연계약서 중 택1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연일, 공연명, 참여자명이 확인되는 자료</li> <li>- 예명 활동의 경우,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</li> <li>- 언론매체 기사의 경우 URL주소 포함</li> </ul>
연극	<p>※최근 3년 동안의 활동 기준임</p> <p>▶직업별기준  <b>배우</b> : 3편 이상의 연극 공연 출연  <b>* 장기공연 출연 배우의 경우</b>  12주 이상 연속하여 총 36회 이상 출연하면 '3년 동안 3편'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, 8주 이상 연속하여 총 24회 이상 출연하면 '3년 동안 2편'의 활동 실적으로 인정  <b>연출가</b> : 1회 이상 연극 공연 연출  <b>극작가</b> :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해 발표  <b>비평가</b> : 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 출간  <b>기획, 기술지원 스태프</b> : 3편 이상의 연극 공연 참여</p> <p>▶세부기준  <b>1권</b> : 개별 독립된 공연을 지칭하며, 동일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</p> <p>▶자료  <b>표지/발행정보면/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첨부 중 택1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연일, 공연명, 참여자명이 확인되는 자료</li> <li>- 예명 활동의 경우,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</li> <li>- 언론매체 기사의 경우 URL주소 포함</li> <li>- 장기공연 출연 배우의 경우 장기 출연 확인 가능한 계약서, 지급 통장 내역 첨부</li> </ul>
영화	<p>▶직업별기준  <b>배우</b> : 최근 3년 동안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  <b>감독</b> : 최근 5년 동안 (단편영화 경우 3년)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상영된 영화 1회 이상 연출  <b>시나리오작가</b> :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통해 발표</p>

문화예술 분야	세부 기준
	<p><b>비평가</b> :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</p> <p><b>기획, 기술지원 스태프</b> : 최근 5년 동안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2편 이상의 영화 참여</p> <p>▶세부기준  * <b>관련법규 영화상영관 / 저작권법 제2조제36호</b>  상영등급분류 /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 출연의 경우 배우활동으로 미인정</p> <p>▶자료  <b>출연(참여)확인서와 소득 자료/ 계약서와 소득 자료 중 택1</b>  - 작품명, 상영일 및 제작사,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- 소득 자료는 통장사본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 - 통장사본 첨부 경우 지급처(제작사), 지급일시, 계좌소유주 정보 확인 필요  - 모바일뱅킹 거래내역은 증명자료로 확인이 어려움  - 예명 활동의 경우,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</p>
연예	<p>※최근 3년 동안의 활동 기준임</p> <p>▶직업별기준  <b>배우, 개그맨, MC, 프로듀서 등</b> : 3편 이상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드라마, 음악·코미디·예능·교양 프로그램 등에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  * <b>장편드라마 출연배우의 경우</b> : 16회 이상 고정 출연은 '3년 동안 3편 이상'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</p> <p><b>패션모델</b> : 3회 이상 패션쇼에 출연하였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</p> <p><b>공연자</b> :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 출연</p> <p><b>작가</b> : 1편 이상의 대본을 드라마·예능·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발표 ( * 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 최근 5년 동안의 활동)</p> <p><b>비평가</b> :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</p> <p><b>기획, 기술지원 스태프</b> :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(최근 5년) 혹은 연예 공연에 참여(최근 3년)</p> <p>▶세부기준  <b>1편</b> : 개별 독립된 작품을 지칭  * 패션쇼와 광고 분야의 경우 모델 활동만 인정</p> <p>▶자료  <b>등급확인서/출연확인서와 소득 자료 또는 계약서와 소득 자료, 관련 홈페이지 URL 중 택1</b>  - 작품명, 방영일 및 제작사,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- 소득 자료는 통장사본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 - 통장사본 첨부 경우 지급처(영화제작사), 지급일시, 계좌소유주 정보 확인 필요  - 예명 활동의 경우,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, 출연확인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</p>
만화	<p>※최근 5년 동안의 활동 기준임</p> <p>▶직업별기준  <b>만화가</b> 아래 중 택1  - 1권 이상의 만화 작품집을 출간하였거나,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6개월 이상 연재 혹은 5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하여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 - 5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 전시</p> <p><b>비평가</b> : 5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만화 비평집 출간</p> <p><b>기획, 기술지원 스태프</b> : 3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참여하거나 3회 이상의 전시 참여 (*기술지원 스태프는 2년 이상 만화 작품 제작에 참여한 경우에 한함)</p>

문화예술 분야	세부 기준
	<p>▶ 세부기준  <b>1권</b> : 국제표준도서번호(ISBN) 부여된 독립된 서적</p> <p>▶ 자료  <b>작품(만화,비평)집</b> : 도서 표지/발행정보면  - 작품 발표일, 작품명,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<b>연재 작품</b> : 연재 페이지와 계약서 또는 소득 자료 (통장사본 등)  - 연재 매체, 작품 발표일, 작품명,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- 통장사본 첨부 경우 지급처(출판사), 지급일시, 계좌소유주 정보 확인 필요  <b>전시</b> : 도록, 리플릿 표지/내지  - 전시 기간, 전시명 및 주최 기관,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- 예명 활동의 경우,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</p>

### 3 예산편성 지침

- 지원금 운영 및 관리
  - 지원금의 집행 영수증 및 이체확인증 제출 필수(영수증빙이 불가능할 경우, 해당 금액은 환수 요청)
  - 지원금 전용 통장을 운영하여 관리(1사업 1통장)  
기존에 보유한 통장 사용가능하며 반드시 '0원'인 통장이어야함
  - 지원금 잔액 및 이자 반납 의무
  - 지원금 계정과 연결되는 체크카드 발급
  -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가능
  - 원천세 등 세금 신고는 사업기간까지 마감되어야 하며, 이를 위해 매월 원천세 신고
- 지원금 집행 및 정산
  - 지원금은 교부 이후 사업기간 내 집행, 교부 전 집행 금액은 자부담 처리
  - 지원금은 체크카드 결제과 계좌이체로만 집행 가능하며 집행 증빙서류 제출

결제 방법	증빙 자료
카드 결제	1. 카드영수증 ※ 카드영수증에 구입내역(물품, 단가, 수량)이 명시되어있지 않을 경우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(내역서) 추가 제출 필수
계좌 이체	(개인 사례비: 인건비) 1. 입금확인증 또는 이체거래내역확인서 2.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. 국세·지방세 납부영수증(아래 세 가지 서류 중 택 1) - 국세·지방세 납부서+이체증 - 국세·지방세 납부서+은행출납도장 - 국세납세사실증명+지방세목별 과세증명 4. 신분증, 통장 사본



	(개인사례비 외: 업체 거래) 1. 입금확인증 또는 이체거래내역확인서 2. 전자세금계산서, 계산서 등 영수증 ※간이영수증은 불인정 3.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(내역서) 4. 사업자등록증, 통장 사본
--	--

○ 지원금 집행 불가 내역

- 지원금 집행 불가 항목이 지출되었을 시, 해당 금액 환수 조치

※<경기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젝트: 공간조성형>의 경우 공간조성 및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 가능

인정불가 경비 목록	세부 내역
자산취득성 물품	○ 가구(책상, 의자, 선반 등) ○ 전자기기(마이크, 카메라, 보조배터리, PC, 프린터 등) ○ 약기 ○ 각종 집기류(거울, 화분, 서랍, 카메라 삼각대 등) 등 ※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 적발 시 재단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 ※ 자산취득성 물품에 해당되는지 미리 재단과 협의 필수(자의적 해석 불가) ※ 자산취득성 물품의 기준 : 소모품(조달청 고시 내구연수 기준 내구연한 1년 미만 취득단가 20만원 미만)이 아닌 물품 : 관련 근거 : 「물품관리법」 제19조, 조달청 고시 「물품분류지침」 제2조
프로그램 운영과 관계없는 단체·기관의 운영 경비	○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상근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 ○ 사무실 임대료, 시설비, 수선비 ○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무관한 사무용품, 공과금, 전화요금 등
시혜성 물품	○ 강사 및 프로그램 참여자 사례성 선물용품 ○ 행사 기념품 구입비, 상금, 사례금 예) 보조배터리, USB 등의 기념품, 문화상품권 등
과도한 식·음료비 (다과비&회의식비)	○ 매회 식사류(피자햄버거치킨 등) 지출은 지양 ○ 참여자 수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○ 사업참여인력 외 다른 인력의 식비까지 지출한 경우 ○ 식비 책정한도 이상을 지출한 경우
주류 및 유희성 지출	○ 주류 구입 불가 ○ 회의식비가 아닌 강사 회식성(심야시간) 지출 불가 ※ 회의식비 지출 시 참여자명, 인원수, 회의사진이 증빙된 회의록 작성 및 제출 필수
경기문화재단과 협의되지 않은 인건비 지급	○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(강사비 등) 지급 불가 ○ 수업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주강사, 보조강사에게 강사비 지급 불가 ○ 수혜자 및 학부모에게 사례금 지급 불가(원고비 등) ○ 인건비 중복·교차 지급 불가 예시) 주강사에게 보조강사비 지급 불가, 특강강사에게 주강사비 지급 불가
참여 인력 및 단체 명의의 사업체에 사업비 집행	○ 사업 참여 인력 및 단체와 관련된 사업체(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사 포함)에 모든 사업비 집행불가(추후 발견 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)
기타 사항	○ 지원금(보조금) 통장 이자 반납 수수료 ○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육 기자재 중 교육시간 외 용도가 더 큰 기자재 임차 시 사전에 경기문화재단과 협의 필수</li> <li>○ 교부신청에 제시되지 않은 비소모품 구입 불가</li> </ul>
--	--

<b>&lt;참고&gt;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영지침 중 카드 사용제한 업종</b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. 유흥업종 : '한국표준산업분류'에 따라接客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,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등</li> <li>. 위생업종 : 아미용실, 피부미용실, 사우나, 안마시술소, 발마사지, 스포츠마사지, 네일아트, 지압원 등 대인 서비 등</li> <li>. 레저업종 : 골프장, 골프연습장, 스크린골프장, 노래방, 사교춤, 전화방, 비디오방, 당구장, 헬스클럽, PC방, 스키장 등</li> <li>. 사행업종 : 카지노, 복권방, 오락실 등</li> <li>. 기타업종 : 성인용품점, 총포류 판매점 등</li> </ul> <p>※ 지원사업비 카드사용 제한업종 가맹점에서는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, 위반 시에는 사용이 중지되거나 해당 지원금 반납 등 교부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</p>

○ 회계검사수수료 단가 기준

- 지원금 3백만원 이하의 경우 편성 불필요

사업규모	수수료
7백만원 미만	187,000
7백만원 ~ 1천 5백만원 미만	226,000
1천 5백만원 ~ 3천만원 미만	302,000
3천만원 ~ 4천만원 미만	360,000
4천만원 ~ 5천만원 미만	390,000
5천만원 ~ 6천만원 미만	541,000

※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3년도 회계검증 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함

4

자주하는 질문

구분	질문	응답																				
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젝트	연속지원 가능한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일한 사업으로 신청 시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연속 지원 시 전년도 평가 결과가 심의에 반영됨																				
	유형을 교차하여 연속 지원 가능한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신청 시, 유형을 교차해서 지원가능 단, 연차 단계에 따라 '리서치형'은 3차년도에 지원불가 예) (1차년) 리서치형 - (2차년) 프로젝트형 - (3차년) 리서치형 (x)																				
	공간조성형의 공간 조건이 있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도내 유희(폐) 공간, 운영 중인 공간 모두 가능 단, 지원 후 최소 3년간은 공공적 지역 허브 기능을 수행하여야함																				
생활문화 플랫폼 지원	여타 생활문화 관련 사업과 차이는 무엇인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은 동호회 지원사업이 아니라 여러 단체가 연계하고 협력하여 지역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 가는 방식에 집중 <input type="checkbox"/> 단순히 생활문화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보다는 새로운 방식의 연계·협력을 통해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, 그 결과 생활문화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구성이 필요																				
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	생활예술동호회 기준은 무엇인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, 생활문화 확산의 핵심이 되는 공동체 단위 ※ 역사/독서 등 광의의 문화 영역, 감상 동호회 등 제외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래 지원 분야 예시 참고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분야</th> <th>세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문학</td> <td>소설, 시, 희곡, 평론 등의 창작 활동</td> </tr> <tr> <td>미술</td> <td>서예, 서양화, 동양화, 사군자, 스텐실, 디자인, 회화, 캘리그래피 등</td> </tr> <tr> <td>음악</td> <td>합창, 오케스트라, 노래, 악기연주 등</td> </tr> <tr> <td>무용</td> <td>한국무용, 현대무용, 발리댄스, 방송댄스, 라틴댄스, 스윙댄스 등</td> </tr> <tr> <td>연극</td> <td>연극, 인형극, 뮤지컬 등</td> </tr> <tr> <td>영화</td> <td>영화 및 다큐멘터리 제작, 영화이론 및 비평, 만화 및 애니메이션 등</td> </tr> <tr> <td>사진</td> <td>사진 촬영 등</td> </tr> <tr> <td>공예</td> <td>조소, 도예, 한지공예, 리본공예, 목공예, 종이접기 등</td> </tr> <tr> <td>전통예술</td> <td>국악, 마당극, 풍물, 민속악, 민속무용 등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분야	세부	문학	소설, 시, 희곡, 평론 등의 창작 활동	미술	서예, 서양화, 동양화, 사군자, 스텐실, 디자인, 회화, 캘리그래피 등	음악	합창, 오케스트라, 노래, 악기연주 등	무용	한국무용, 현대무용, 발리댄스, 방송댄스, 라틴댄스, 스윙댄스 등	연극	연극, 인형극, 뮤지컬 등	영화	영화 및 다큐멘터리 제작, 영화이론 및 비평, 만화 및 애니메이션 등	사진	사진 촬영 등	공예	조소, 도예, 한지공예, 리본공예, 목공예, 종이접기 등	전통예술	국악, 마당극, 풍물, 민속악, 민속무용 등
	분야	세부																				
문학	소설, 시, 희곡, 평론 등의 창작 활동																					
미술	서예, 서양화, 동양화, 사군자, 스텐실, 디자인, 회화, 캘리그래피 등																					
음악	합창, 오케스트라, 노래, 악기연주 등																					
무용	한국무용, 현대무용, 발리댄스, 방송댄스, 라틴댄스, 스윙댄스 등																					
연극	연극, 인형극, 뮤지컬 등																					
영화	영화 및 다큐멘터리 제작, 영화이론 및 비평, 만화 및 애니메이션 등																					
사진	사진 촬영 등																					
공예	조소, 도예, 한지공예, 리본공예, 목공예, 종이접기 등																					
전통예술	국악, 마당극, 풍물, 민속악, 민속무용 등																					
	생활예술동호회는 어떤 활동을 지원하나?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역 내 생활문화/예술에 관심을 가진 주체들 간 교류 활동 촉진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원 활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류(연계 모임, 워크숍, 발표회, 공연, 전시, 축제 등)</li> <li>- 연구(지역문화 자원 발굴, 조사연구, 토론회, 학습실행공동체 활동 등)</li> <li>- 기타(지역 및 기관 특성에 맞는 활동 제안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역 내 생활문화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</li> <li>•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기획, 운영</li> <li>• 지역사회 환원,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사회 참여 프로그램 지향</li> <li>• 지역 내 생활문화 실태 및 현안 조사 연구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

구분	질문	응답
	예술인커뮤니티는 어떤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?	<input type="checkbox"/> 단체등록을 하지 않은 예술인 개인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도 지원 가능 지원신청 시, 커뮤니티 대표자 "개인" 자격으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에 신청 - 커뮤니티 구성원 전원의 예술인 증빙 필수(아래 중 1 필수) · 구성원별 3개 이하의 예술활동내역 제출(반드시 이름이 들어간 도록, 공연프로그램, 포스터, 연구실적 등) · 구성원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교부하는 '예술활동증명' 또는 '예술인패스' 제출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인된 단체 자격으로 지원할 경우 '사업자등록증'과 '고유번호증' 등 제출
지원신청	전자우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한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우편, 우편접수, 방문우편 모두 접수 불가 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에서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서(지정양식)을 첨부파일로 올려서 지원 신청 제출 - 시스템 관련은 공고문 내 붙임 파일 확인 바람
	제출 서류는 무엇인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원신청서(지정양식)이 있음 - 경기문화재단 누리집( <a href="https://www.ggcf.kr/">https://www.ggcf.kr/</a> )에서 다운 받아 작성 "2024년 경기 지역문화 지원 통합공모"로 검색 - 지원사업별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,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, 주민등록초본 또는 단체확인증(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반드시 첨부[붙임3~7]) (※미첨부시 행정 심의 탈락) -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'예술인커뮤니티'의 경우 예술인 증명서류 제출 필수
	지원금 통장 및 체크카드는 새로 만들어야 하나?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원사업별로 전용 통장이 있어야 함(1개 사업당 1개 전용 통장) - 타 지원금 혼용 불가 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기관 상관없이 기존 사용해온 통장(잔액'0원')도 사용 가능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원금 통장 관련 체크카드 발급 가능. 단 신용카드 발급 불가
	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 받을 수 있나요?	<input type="checkbox"/> 다른 지원사업에 동일한 내용으로 선정되었던 사업의 경우 신청 불가하며 선정된 이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지원사업에 신청 불가
예산편성 및 집행 정산	예산 편성시 '자부담'도 있어야 하는지, 정산해야하는지?	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님. 다만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원금이 부족할 경우 자부담분 편성 가능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부담을 편성했을 시 별도 정산은 필요 없음
	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'수익금'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?	<input type="checkbox"/> 선정 기관 및 단체의 자산으로 취득 불가 <input type="checkbox"/> 프로그램 참가비, 행사 물품 판매비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기부금, 또는 프로젝트 운영비 등에 포함시켜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, 수익금은 정산 대상임(증빙 제출 필수)
	지원금 사용 금지 항목이 있나요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산편성 지침(p.7) 확인 바람 - 주류 구입 및 주류 판매점(술집, 치킨집 등) - 공간조성(시설비, 유지관리비, 리모델링비 등) 및 공과금 납부 - 자산성 물품 구입(소모성이 아닌 물품) 단,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자산성 물품이 필요한 경우 임차 가능 ※ 사업 정산 과정에서 금지 항목 구입이 발견되었을 경우 반납 요청함

구분	질문	응답										
	지원금 300만원 이하의 경우 정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?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완료 후 정산 결과보고서, 지원금 전액 이체확인증, 통장사본 제출 - 지원금 전액을 타 계좌로 이체한 이체확인증과 이체내역이 찍힌 통장사본 제출 - 지원금을 지출한 세부 영수증 및 내역은 별도 요청하지 않음 - 단, 지원금 정산을 간소화한 만큼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예정 - 제출서류 미제출, 증빙자료 불충분, 서류 미비 등은 지원금 집행 세부 증빙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음										
국가문화 예술지원 시스템 NCAS	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가 무엇인지?	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( <a href="https://www.ncas.or.kr/">https://www.ncas.or.kr/</a> )는 2022년 처음 도입되었는데,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구축·관리·운영하고, 17개 광역자치단체(문화재단)의 보조금 주관기관 등이 함께 사용하는 시스템임 -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, 지원 심의 경과 확인, 지원 결정시 교부 신청, 결과보고서 제출 등이 가능함										
	시스템 사용 방법은?	<input type="checkbox"/> 공고문 내 [붙임2] 파일 확인 바람										
기타 문의 사항	기타 문의 사항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문의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사용 방법 문의</td> <td>1577-8751 평일9~18시, 점심시간12~13시 제외</td> </tr> <tr> <td>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문의</td> <td>031-853-9319 평일10~16시, 점심시간12~13시 제외</td> </tr> <tr> <td>생활문화 플랫폼 지원 사업문의</td> <td>031-853-9323 평일10~16시, 점심시간12~13시 제외</td> </tr> <tr> <td>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문의</td> <td>031-853-9319 평일10~16시, 점심시간12~13시 제외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문의처	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사용 방법 문의	1577-8751 평일9~18시, 점심시간12~13시 제외	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문의	031-853-9319 평일10~16시, 점심시간12~13시 제외	생활문화 플랫폼 지원 사업문의	031-853-9323 평일10~16시, 점심시간12~13시 제외	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문의	031-853-9319 평일10~16시, 점심시간12~13시 제외
		구분	문의처									
		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사용 방법 문의	1577-8751 평일9~18시, 점심시간12~13시 제외									
		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문의	031-853-9319 평일10~16시, 점심시간12~13시 제외									
		생활문화 플랫폼 지원 사업문의	031-853-9323 평일10~16시, 점심시간12~13시 제외									
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문의	031-853-9319 평일10~16시, 점심시간12~13시 제외											